

2024년도 제2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통합공고 FAQ

1 과제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 과제 접수 시, 발표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인가요? 발표평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마감 후 3~4일 이내에 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 마감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자료로 발표자료를 필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의 경우는 미등록 시 과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발표평가 일정 : 2024.11.21.(월) ~ 26(화)
- 발표평가 대상 개별 안내 : 2024.11.19.(화) ~ 20.(수)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검토 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 수행의 결과에서 실패를 용인한다고 되어있어서, 성공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실패를 무릅쓰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성공할 경우의 사업화나 현장화의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요?

-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이 실패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난제이지만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고 해결이 되면 적어도 복지돌봄 분야에서 확실히 필요한 수요가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계획서에는 성공을 전제로 사업화나 실용화의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공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화 부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Q3. 통합공고 상 다수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한국형 ARPA-H)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수는 1개로 한정합니다.(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하나의 기관이 공동 또는 위탁으로 복수의 과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시 해당 기관의 연구 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일 연구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의 첨부서류 중 공고안내서 및 제안요청서(RFP),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항목별 분량제한이 있으니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RFP)별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포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작성 바랍니다.

Q5. 과제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안내서의 RFP별 과제구성 요건 및 각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통합공고에서는 복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과제구성이 불가합니다.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RFP별 지원대상 및 특기사항의 필수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수로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Q6. IRIS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성과목표, 지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단계별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참고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입력 시 IRIS 성과지표 메뉴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 등을 필수적으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Q7. 가감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가점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감점 항목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Q8.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일 법인번호로 중복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장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61페이지) 참고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Q9.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공고안내서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Q10.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나요?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 시 신청자격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Q11.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3책 5공)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까지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비 계획 및 마일스톤 목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공고된 총 연구개발기간의 최종 단계까지 마일스톤 목표, 연구내용 및 계획, 연구개발비 계획 등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Q13. 첨부서류 중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연구에 대해 작성하나요?

- 모든 과제는 본 양식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임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고 합당한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Q14. 과제 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 신청 마감일(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하나,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마감일 전에 신청완료 된 과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IRIS 상 주관 연구기관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IRIS 상 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까지 완료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Q15. 과제신청 마감 이후 신청 완료된 과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과제신청 취소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Q16. 사전검토 주요 탈락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하나의 과제에 동일 연구개발기관 중복구성(동일 법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법인번호가 중복되면 사전선별 탈락
- 제안요청서(RFP)별 지원대상 미충족(공동연구개발기관 미구성, 기업·병원 등 특정 연구개발기관 미참여 등)
 - ※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전산 상 구성(추가)하지 않으면 사전선별 탈락(계획서 명시,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등록 등 사유 불인정)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재
 - ※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그 외 제안요청서(RFP)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미충족하는 경우
 - ※ 과제신청 전 반드시 RFP별 지원대상·필수요구 사항 등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2 연구개발비 관련

Q1. 공고문과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금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과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입니다.
- ‘총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Q2. 연구개발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예정인 연구개발비는 RFP에 제시된 정부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의정부 연구개발비 합계액은 RFP상 제시된 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면세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참고 바랍니다.

Q4.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고시 기관 구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이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공기업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6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참고

3 제안요청서(RFP) 관련

Q1. 병원, 기업 모두 필수 참여인가요? (해당 공모분야 : RFP3-1)

- 과제 구성은 병원 혹은 요양병원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의 추진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성과 목표 및 연구내용에 '서비스혁신성숙도, SRL' 레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해당 평가가 과제 결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해당 공모분야 : RFP4-1)

- Service Readiness Level 8에 해당되는 Application/service completed and validated, commercial offer ready에 도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므로 과제 종료 후 전문가 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결과 평가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Q3. 다른 국책과제의 경우 보통 논문이 성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필수의료 RFP의 성과목표에 논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논문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나요? (해당 공모분야 : RFP4-2)

- 네, 임무 5의 과제는 필수의료의 지역완결형과 혁신기술기반으로 현재의 의료상황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극특허와 시스템을 통한 지역 또는 권역별 의료의 완결성에 더 평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 상기 FAQ 내용은 필요시 추가·보완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